

의안 번호	547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**점 토 보 고 서**

**운영위원회**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8.  
전문위원 신정경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양순임의원외 20명
- 나. 의안번호 : 제54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11. 4.
- 라. 회부일자 : 2025.11.14.

## 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(2023. 12.)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(2025. 1. 개정)에 따라,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 사전·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무화(안 제5조)
- 다.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(안 제6조)
- 라.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(안 제7조)
- 마. 심사기준 및 회의 절차 강화(안 제8도 및 제9조)
- 바.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출장보고서 제출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사. 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강화(안 제13조)
- 아.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 규정 신설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 : 2025. 11. 6. ~ 2025. 11. 10.(의견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의견

개정항목	주요개정내용	검토의견
안 제4조 (심사위원회 설치)	민간위원 외부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 명시. 위원 구성 방식을 '민간 위원 + 소속 의원 2명 이하'로 명확화	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핵심 개선 사항임
안 제5조 (계획서 사전공개)	출국 45일 이전 계획서 의회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.	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사전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.
안 제6조 (지역주민 의견수렴)	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10일 이상 의무화.	주민의 알 권리 및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.
안 제7조 (출장계획서 제출 수립 및 공개)	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일정 포함 금지 명시	출장 계획 수립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유성 일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근거를 마련함. 단 제명중 제출수립이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다소 어색함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
안 제8조 (심사기준)	심사 시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 의무화	출장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'단순 시찰' 목적을 배제함.
안 제9조 (회의 및 재의결)	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출석,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. 의결 후 계획 변경 시 재의결 절차 명시.	공무국외출장의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, 계획 변경의 투명성을 높여 외유성 변질 가능성을 차단함.

안 제11조 (출장제한 및 환수)	부당 경비 지출에 대한 환수 조치 명시 및 환수 결정 시 출장 제한 가능 조항 신설.	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함.
안 제12조 (보고서 제출 및 심의)	보고서 제출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.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의 적법·적정성 심의 의무화 및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.	사후관리의 실효성 높임
안 제13조 (예산편성·집행)	여비, 운임, 통역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외의 비용 지출 금지 명시	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이 개인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함.
안 제15조 (징계현황 공개)	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의무화	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의원 활동의 책임성을 극대화함

#### 나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표준안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
- 특히,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(외부 추천/공모 의무화),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, 계획 변경 시 재심의 의무화, 부당 경비 지출에 대한 환수 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판단됨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, 외유성 출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여 성북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아 안 제7조 제명에 대한 수정(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)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